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 지원 -

2019. 9. 30.

〈 목 차 〉

1. 출장 개요	1
2. 출장 세부 내용	3
(1)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MCCSS)	3
(2) Community Living Ontario (CLO)	8
(3)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BCCL)	13
(4) Judith Sandys (Ryerson University)	19
붙임	25
(붙임 1)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탈시설화 정책 현황 발표자료	25
(붙임 2) 캐나다 온타리오주 탈시설 역사 개요	30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비교적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대규모의 탈시설화를 추진한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 사례를 통해 한국 탈시설 정책에서의 시사점 도출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 및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서비스 지원사항 조사

□ 과제명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 출장자

- 오욱찬 부연구위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 김성희 연구위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 출장기간

- 2019. 8. 25.(일) ~ 8. 31.(토)

□ 출장지역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
- 방문도시: 토론토(Toronto), 브램턴(Brampton)

□ 방문기관

기관명(면담자)	기관(면담자) 개요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MCCSS)	온타리오주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 지원 담당부처
Community Living Ontario (CLO)	온타리오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조직의 연합 단체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BCCL)	온타리오주 브램턴-케일던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조직
Judith Sandys (Ryerson University)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 연구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1일차	2019. 8. 25. (일)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이동	-	-인천→토론토 이동
2일차	2019. 8. 26. (월)	캐나다/ 토론토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MCCSS)	-Kamal Akhtar -Allan Devlin -Michael Cornelius	-온타리오 주정부 중 아동지역 사회서비스부(MCCSS)의 장애 인 탈시설 및 발달서비스 담당 부서와 면담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탈 시설화 정책 현황(붙임1) 설명
3일차	2019. 8. 27. (화)	캐나다/ 토론토	Community Living Ontario (CLO)	-Keith Dee (Director)	-온타리오주의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이자, 지역사회 생활 서비 스 제공기관의 연합단체인 Community Living Ontario 인터뷰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탈 시설화 정책 현황(붙임1) 설명
4일차	2019. 8. 28. (수)	캐나다/ 토론토	Ryerson University	-Judith Sandys (Associate Professor Emeritus)	-온타리오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의 역사를 집필 한 Judith Sandys 교수 면담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탈 시설화 정책 현황(붙임1) 설명
5일차	2019. 8. 29. (목)	캐나다/ 브램턴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BCCL)	-Jim Triantafilou (Executive Director) -Charles Rego (Director)	온타리오주 브램턴 지역의 발달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생활 서 비스 제공 민간기관인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면담
6일차	2019. 8. 30. (금)	캐나다/ 토론토	인천 이동	-	토론토→인천 이동
7일차	2019. 8. 31. (토)	한국/ 인천	인천 도착	-	인천 도착

2 출장 세부 내용

(1)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MCCSS)

□ 기관 개요

- 아동·지역사회·사회서비스부(MCCSS)의 역할
 -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정부의 부처로서 주요 업무는 온타리오주의 ① 공공부조(Ontario Works,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② 지역사회 및 발달서비스, ③ 아동 및 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지원명령 집행, ④ 인신매매 개입 및 예방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MCCSS 지역사회서비스국(Community Services Division)의 역할 및 조직
 - 지역사회 강화, 다양한 취약계층 성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발달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시청각 장애인, 원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하위 부서로 정책이행부(Program Policy Implementation Branch), 서비스전달지원부(Service Delivery and Supports Branch), 지역사회지원정책부(Community Supports Policy Branch), 반인신매매조정사무소(Provincial Anti-Human Trafficking Coordination Office)를 두고 있음

□ 면담자

- Kamal Akhtar (Senior Policy Advisor, Community Supports Policy Branch, Community Services Division, MCCSS)
- Allan Devlin (Senior Policy Advisor, Community Supports Policy Branch, Community Services Division, MCCSS)
- Michael Cornelius (Project Coordinator, Program Policy Implementation Branch, Community Services Division, MCCSS)

□ 주요 인터뷰 내용

- 온타리오주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개괄
 - 온타리오의 첫 번째 장애인 시설은 1876년에 설립되어 1976년에 시설화가 정점

에 이름. 1970년대까지는 장애에 대한 의료모델이 지속되었고, 1976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탈시설이 시작됨.

- 1970년대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배경이 되었음. 첫째는 지역사회 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었음. 1970년대 지역사회 생활 운동 과정에서 장애인도 온타리오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생활을 누릴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게 됨. 둘째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인들의 삶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시설 보호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었음.
- 사회적 요구와 학술연구 결과에 대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공감하여 본격적인 탈시설화를 시작하였음. 두 가지 방향의 전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법률적 접근으로 1974년 발달서비스법을 제정하여 탈시설화를 제도화하고, 둘째는 낮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음. 또한 법률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담당부서가 보건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부로 이관되었음. 소관부처의 변화는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의료모델에서 자립생활, 사회통합, 기회균등 모델로 전환된 것을 의미함.
- 이 시기에 기존의 시설들은 단체거주 방식에서 작은 규모의 거주공간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음. 1977년 최초로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들을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하였음. 1977~1985년 사이에 5개 시설이 추가로 폐쇄되었으며, 다른 시설들도 규모가 축소되었음. 1980년대부터는 남아있는 기존 시설에 신규입소를 금지시켰음.
- 1987년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25년 계획이 수립되었음.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이후 탈시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증대되었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었음.
- 1997년부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와 소득보장을 시작하였음.
- 2004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개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09년 3월까지 3개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당시 발달장애인 1,000여명이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되었음.

○ 2008년에 제정된 Ontario's 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가 기존의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을 대체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변화한 것, 그리고 발달서비스의 진입창구가

- DSO(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로 단일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 발달장애인 정의는 과거에는 IQ 테스트를 통해 지능 정도로 판단했음. 법률 제정 이후에는 18세 이전에 인지력, 이해력, 사고력 손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습 등에 제약이 있고 그 상태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정의되며, 정신과 의사 혹은 관련 전문의가 포괄적으로 진단함.
 - DSO로 서비스 창구가 단일화 되면서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DSO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지만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은 재량적임. 주거서비스 등 연계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함.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대신에 ‘커뮤니티 리빙’(community liv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커뮤니티 리빙’이라는 표현은 1950년대부터 장애인 가족 단체에서 사용하였음. ‘돌봄(care)’이라는 표현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의료 분야에서 ‘health care’와 같이 치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생활(living)’이라는 표현은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CLO (Community Living Ontario)의 중요한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음.
- 폐쇄된 장애인 시설들은 모두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장애인 시설이 현재 남아있는가?
-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거주시설은 애초에 없었음. 하지만 DSO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의 소규모 거주시설은 존재할 수 있음. 그 현황은 파악되지 않음.
- 신체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거 시설 보호와 탈시설화 과정도 발달장애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가?
- 발달장애인 시설 외에 정신병원을 제외하면 애초에 장애인 시설이 없었음. 정신병원은 현재도 보건부가 담당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시설을 제외하면 다른 유형을 위한 시설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음. 다만 신체장애인의 경우 아동시설만 존재했음.
-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형태는 어떠한가?
- 정부 재정지원 민간기관들이 운영함. 3명 혹은 그 이상이 한 집에 거주함. 지원인력은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다름. 1명 혹은 그 이상이 있음.
- 기존 거주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은 시설 폐쇄 이후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중

사자들의 역할을 전환하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한 것이 있는가?

- 그 문제는 2009년 3개 시설 폐쇄할 당시 이슈가 되었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음. 첫째는 노조와 협상하여 시설 폐쇄 일정을 사전에 미리 확정하여 실직 시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둘째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다른 일 자리를 알선하는 것이었음. 셋째는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이 조기 퇴직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었음.

○ 2008~2009년에 마지막 남은 3개의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면서 약 1,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일시에 지역사회로 나왔음. 어떻게 그렇게 대규모의 탈시설이 일시에 가능했는가?

-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해왔음. 그동안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도 상당히 쌓였음. 1985년 한 해에만 발달장애인 서비스 예산이 1,000만 달러에서 18배가 증가하기도 하였음. 2009년 당시에 충분한 기간의 준비가 있었고 당시에 지역사회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에 공격적인 예산 투자를 하였음. 당시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나오기 전에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후 탈시설을 실행하였음.

○ 2009년 당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는 누가 담당하였는가?

- DSO는 2011년에 설치되었음. 2009년 당시에는 개별 지역사회 생활 (community living) 기관들이 지방정부들과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였음.

○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발달장애인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양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임. 예산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기자 목록이 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만큼 많음. 현재 약 19,000명이 발달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약 19,000명이 서비스 대기중임.
- 둘째로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등 가족이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현재는 돌봄 가족이 고령화된 이후에야 개입하게 되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임.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임. 최근 주정부 정

권 교체 등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대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임. 현 정부가 이 분야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발달서비스가 권리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재량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됨.

- 이용자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됨. 1개의 서비스가 5명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 제거도 잘 안되어 있음. 그래서 이용자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현재 대학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 Community Living Ontario (CLO)

□ 기관 개요

- 1953년 지적장애인의 부모단체로 출범하여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연합단체.
- 온타리오주 전역에 12,000개 이상의 회원단체들이 가입해 있으며, 104개의 Community Living 지역협회가 존재함.
- CLO는 온타리오주 Community Living 조직의 연합단체로서 회원조직에 대한 지원과 주정부에 대한 견제 및 정책참여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지만, 제한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 CLO의 직접 사업

구분	내용
가족결연 프로그램 (Family Engagement)	-지역협회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모임 조직 -‘사회적 가치 및 포용’(Social Value & Inclusion)이라는 제목의 발달장애인 가족 워크숍 개최 -발달장애인 가족의 소통 공간으로서 온라인 허브 개발
학생결연 프로그램 (Student Links)	-고등학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14~21세)을 대상으로 졸업 후 미래 준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통의 관심을 가진 장애인과 멘토를 연결하여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 -멘토는 주 1회, 2주에 1회, 월 1회 등 주기적으로 지적장애 학생과 만나 활동
인식개선 사업 (Re:Action4Inclusion)	-청소년(고등학생) 사회정의 운동 모임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모금 사업 (A Million Possibilities)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모금 캠페인
파트너십 사업 (Ready, Willing & Able)	-캐나다지역사회생활협회(Canadian Association for Community Living), 캐나다자폐스펙트럼장애연합회(Canadian Autism Spectrum Disorders Alliance)와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형성
통합교육 지원사업 (Inclusive Education)	-통합교육 분야에서의 연구사업 추진 -현재는 교육 접근성 차원에서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의지원 조사
권익옹호 (Advocacy)	-지적장애인 권익 관련 이슈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 작성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들과의 협력 -정부 정책 및 법률에 대한 분석과 대응 -온타리오 주정부와의 지식 공유

□ 면담자

- Keith Dee (Director of Membership Services and Student, CLO)

□ 주요 인터뷰 내용

○ Community Living Ontario (CLO) 설립된 배경과 주요 활동은?

- CLO는 1950년대 지적장애인들의 가족 모임으로 시작했음. 당시는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었는데, 부모들의 선택은 아이를 시설로 보내거나 학교도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 두는 것이었음. 온타리오 내에서 작은 그룹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음. 집에 있으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자녀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운동으로 이어졌음. 이후 그러한 그룹들이 아동, 성인 장애인들에게 그룹홈이나 데이프로그램(day program)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 CLO는 처음에 국지적 기관이었지만 이후에 온타리오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진 작은 조직들을 엮어주는 단체로 발전했음. 해마다 성장해서 지금은 104개의 지역 회원 기관이 있음. 회원 기관들은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작은 조직들도 존재함. 우리 단체는 회원 기관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상하관계가 아닌 자발적 연대조직임. CLO 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음. CLO는 현재 4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CLO가 회원 조직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는가?

- CLO의 직접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CLO가 제공하는 직접서비스는 주 전체를 제공 범위로 함. 대표적인 것은 학생-멘토 연계 프로그램인 ‘Student Links’ 프로그램임. 지역사회 내에 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의 향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멘토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을 위해 1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음.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재 온타리오 전역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연간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새로운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고 있음. 멘토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장애학생을 먼저 만나 보고 그들의 관심사를 살펴본 후 지역사회 내에 적합한 사람을 모색함. 예술, 음악 분야부터 기술 분야까지 다양함. 이 프로그램은 100%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발달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s)의 일종임. 또 다른 직접 서비스로 옹호서비스 ‘Advocacy’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100%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됨.
- Student Links 프로그램은 약 12년 전에 시작되었음. 당시 데이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커뮤니티 리빙 기관에 배정되지 않고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음. 개인이 데이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었음. 이전에 커뮤니

터 리빙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프로그래프는 장애인을 분리하는 방식이었음. 주정부가 보다 지역사회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고, CLO가 Student Links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음.

-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의 확대 과정에서 CLO의 역할은?
 - 시설 폐쇄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은 우리 기관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임. 주정부에 탈시설을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적 운동을 하고 대중을 설득시켰음.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해서 실현시켰음.

- 시설의 폐쇄에 대해 기존 거주시설의 종사자들, 혹은 장애인 가족들의 저항은?
 - 탈시설화는 사실 기존 종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시설 거주인이 줄어들면서 종사자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음. 당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여 탈시설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

- 마지막 3개의 시설을 폐쇄한 이후 시설 거주인과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및 배상 판결 이후 주지사가 2014년 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소송과 사과의 의미는?
 - 우리 기관은 당시 장애인과 가족의 집단소송을 지원했음.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들을 지지하고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음. 우리 단체는 주지사가 사과를 했을 때 축하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음.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탈시설 조치와 사과가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함.

- 현재 DSO(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는 발달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s)를 받기 위한 창구인데, DSO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 DSO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관료적으로 중앙화시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함. 주정부는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편하게 제공하고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 그리고 주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 과거에 지역별 발달서비스의 양과 질의 편차가 컸는데 DSO 도입으로 이를 평준화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이 작동되지 않음. CLO는 당시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기관의 정보를 모아서 정부에 제공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준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DSO 도입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관료적인 성격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음.

○ DSO가 발달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창구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 발달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입 창구를 DSO를 단일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보지만 실행 방식이 문제임. DSO가 노력한다는 것은 알지만 잘 작동되지 않는 환경이라 아쉬움. 장애인 개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DSO가 중앙화되면서 그런 측면이 아쉬움. DSO 도입 이전의 과거 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에 의한 자원이 좋은 역할을 했는데, DSO가 도입되면서 그런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음. DSO가 그런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예를 들어, 10년 전이라면 발달장애인에게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조직이 우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DSO의 서비스 연계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DSO가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조직에 발달서비스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수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님. 발달서비스 내에서 주거서비스 등 영역별로 과거의 사업 수행 총량에 근거하여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지급되는 방식임.

○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조직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면 예산이 지원되는가?

-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큰 관심이 없고, 개별 서비스 기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개별 조직에서 할 수는 없고 정부가 나서거나 CLO가 제안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주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후 발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임.

○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조직들 중 CLO 회원 조직과 비회원 조직의 차이는?

- 현재 온타리오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기관 350개 기관 중에서 CLO에 속한 기관은 104개임. CLO에 속하지 않은 기관들 중에서는 매우 작은 규모이거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신장애인 서비스 기관이거나, 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곳들이 많음. CLO에 속한 104개 기관들은 그런 기

관들과 달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CLO 회원 조직과 비회원 조직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철학적 차이가 있음. CLO는 과거에 195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그룹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것마저도 작은 시설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CLO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였음.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그룹홈보다는 개별화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데이프로그램도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CLO 내 몇몇 기관들은 그런 방향에 동조하지 않기도 했음. 그러면서 우리와 방향성이 다소 다른 조직으로 OASIS라는 연합단체가 생겼음. 오아시스는 종사자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같은 사업적인 접근을 하는 편임. 양 단체의 회원기관이 겹치기도 하고, 양 단체 모두에 속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음. 현재 CLO 회원 조직의 90% 정도는 OASIS에 속해 있음. 처음에는 그 조직과 대립했지만 지금은 서로 상생하려 노력함.

○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지원은?

- 정책, 지원, 서비스가 개인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 개인의 욕구가 정책에 맞추지 않고 정책이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야 함.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인의 욕구를 맞춰야 함.

(3)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BCCL)

□ 기관 개요

- 온타리오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340개 발달서비스 제공기관 중의 하나이자, 104개 지역사회 생활(communit living) 조직의 하나로 브램턴(Brampton) 시의 케일던(Caledon) 지역의 서비스 담당.
- 1957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체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던 단체로 설립된 후 1960년대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역할 수행.

○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유아기 교육서비스 (Early Childhood Education)	-학령기 전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과 취학전 센터에 상담 및 지원 제공 -취학전 세팅에서 아동의 발달과 통합, 그리고 학교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 촉진 -PIRS: 특수육구 자원 프로그램과 유자격 보육제공자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게 취학전 서비스 제공
성인 및 아동 서비스 조정 (Adults & Children Service Coordination)	-유연 및 상속 계획, 교육 및 학교 문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 그리고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지역사회 자원 제공
지역사회 참여 지원 (Community Participation Supports)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 제공(자원활동, 지역사회 견학,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 -성인 발달장애인 개인의 관심, 기술, 성장과 발달,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의미있는 경험 제공
지역사회 생활 지원 (Community Living Supports)	-지역사회 내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개인의 목표, 기술, 관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 -그룹홈(Group Living), 지원자립생활(Supported Independent Living), 위탁가정(Family Home) 등 다양한 지원 모델

자료: <https://bramptoncaledoncl.ca>

○ 조직 및 인력

부서	인력(명)	인력 구성
사무국	11	
재정팀	6	
지역사회지원팀	18	
아동가족지원팀	13	서비스코디네이터(Service Coordinator) 8명, 지역사회통합활동가(Community Inclusion Worker) 4명
청소년팀	16	자원상담사(Resource Consultant) 14명
지부(Queen Street)	8	지역사회참여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Worker) 6명, 고용상담사(Employment Consultant) 1명
지부(Rutherford Road)	10	지역사회참여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Worker) 9명

부서	인력(명)	인력 구성
지부(Fisherman Drive)	13	지역사회참여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Worker) 12명
지부(Caledon Office)	3	서비스코디네이터(Service Coordinator) 1명, 지역사회참여지원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Support Worker) 1명
지부(Connections Caledon)	4	지역사회참여지원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Support Worker) 4명
지부(Connections Initiative)	6	지역사회참여지원활동가(Community Participation Support Worker) 5명
계	108	

자료: <https://bramptoncaledoncl.ca>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 연간 수입·지출

- 2018 회계연도 기준 BCCL의 연간 수입·지출액은 약 240억 원이며, 수입의 84.5%를 주정부 지원금이 차지함.
- 지출에서는 주거서비스(residential service)가 64.5%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지원(community support)에 18.6%, 휴식지원서비스(respite)에 5.1%를 지출하고 있음.

	2018	2017
Revenue: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 22,554,446	\$ 21,712,463
Resident fees	1,681,166	1,672,865
Region of Peel	1,158,777	1,088,849
Program fees	629,826	591,785
Amortization of deferred contributions related to capital assets (note 5)	211,125	23,535
Vocational programs support	203,590	127,371
Other grants, fees and rebates	102,077	86,983
Administrative fees (note 9)	59,700	61,200
United Way of Peel	58,874	57,355
Donations and fundraising	25,559	23,340
Gain (loss) on disposal of capital assets	2,780	(468)
	26,687,920	25,445,278
Expenses:		
Residential services	17,159,512	16,747,044
Community supports	4,936,904	4,875,909
Respite	1,353,161	1,338,904
Transfer payment flowthroughs	1,251,467	693,456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s	1,163,817	1,093,889
Amortization of capital assets	590,962	548,178
Other	85,767	4,271
United Way of Peel Initiative	58,874	57,355
	26,600,464	25,359,006
Excess of revenue over expenses	\$ 87,456	\$ 86,272

자료: BCCL (2018). Financial statements of Brampton Caledon Community Living.

□ 면담자

- Jim Triantafilou (Executive Director, BCCL)
- Charles Rego (Director, Community Living Supports, BCCL)

□ 주요 인터뷰 내용

○ BCCL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활동은?

- BCCL은 1957년에 설립됨. 처음에는 장애아동 대상의 교육 시설로 시작했음. 당시 발달장애 아동들이 일반적인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었음. 장애아동의 직업을 위해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운영했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었는데, 45명이 일하는 작업장을 작년엔 폐쇄했음.
- 1960~70년대부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확장했음. 1970년대 큰 변화는 공립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을 받아주기 시작한 것임. 그러한 정책의 변화를 주도한 분이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G. Davis)인데, 당시 온타리오주 교육부장관이었고 나중에 주지사까지 지낸 분임. 현재 BCCL이 입주한 건물이 그분의 집이었음.
- 이후 피에르 버튼(Pierre Berton)이라는 기자가 휴로니아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취재해 폭로한 일이 있었음. 이후 정치적 동력이 생겨 탈시설화 운동이 생겨났고, 주정부가 거주시설을 조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에 요구가 증가했음.
- 1970년대 설립된 많은 그룹홈들은 종사자의 사고방식도 그렇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그렇고 사실 시설과 운영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 한국도 탈시설화를 추진하면서 그룹홈과 같이 새로 만들어지는 주거서비스에 대해 그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이후 40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졌음.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간보호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스, 교육서비스, 주거서비스, 가족서비스, 가족휴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BCCL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내용은?

-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에는 다양한 모델과 단계가 있음. 자립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이 제공됨.
- 그룹홈은 동거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함. 보통 3~4명이 거주하며 최대 5명이 거주함. 거주인 중에서는 기존에 거주시설에서 온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원래 지역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하며, 그들마다 욕구가 다름. 그룹홈에 거주하는 많

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낮활동 지원 프로그램(Day support)이 필요한데, 센터 혹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짐. 이를 위해 개인의 관심과 욕구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됨.

○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도전과제는?

- 최근의 도전과제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예산지원이 부족함. 15,000명 정도가 발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가족이 나이가 들 경우 가족의 부담이 큼.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은 행동상의 문제, 병리학적 문제 등으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것임. 2014년에 가족들이 요구하여 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왔음. 이 지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병원에 두고 도망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특히 갓 성인이 된 경우 가족이 없으면 노숙인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여성의 경우 성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함.
- 2015년에 발족한 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것이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DSO에서 발달서비스에 공식이 날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라는 것이었음.
- 온타리오 주의 고질적 문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가 전혀 없는 것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임. 2014년에 DSO를 발족하여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하려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잘 진행되지 않음. 정치적으로 관심도도 낮은 상황임. 교육, 의료 등의 분야보다 관심도가 낮음. 교육,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치적 목소리가 높는데, 장애인 분야는 그렇지 않음. CLO가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아 좋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음.
- 온타리오주의 정책 기조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이 적음.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조직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주정부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음.
- BCCL은 올펜스버거의 사회적 가치 부여 이론에 충실하고자 함.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지위, 발달장애인의 지위가 좋지 않는데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임.

○ 최근 BCCL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폐쇄한 이유는?

- BCCL은 원래 3개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했으며, 이후에 수요가 적어 1개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했음.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성격이 있고, 주정부가 권고한 보호작업장 폐쇄에 대해 우리 종사자들도 반대하지 않았음.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호작업장 대신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경험과 활동을 제공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단지 보호작업장 폐쇄 외에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음.

○ 현재 BCCL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BCCL은 현재 직업서비스를 직접 수행함. 온타리오 주정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용서비스를 위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자금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고 몇 주 지나야 예산지원이 됨. 그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줄어들었음. 장애가 심한 경우 고용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원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경향이 있음.
-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은 일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을 환영함. 발달장애인도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임. 은행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음. 하지만 일을 한다 해도 직장 외에서는 교류가 없는 것이 문제임. 사회적으로는 다소 고립된 상태라 볼 수 있음. 대부분은 혼자 일하거나 저임금인 경우가 많음.

○ 자립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가?

- 그런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특수한 개인별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요구만 해결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임. 예를 들면 은행 관련 일만 처리해주면 되는 경우, 음식 재료를 사는 것만 봐주면 되는 경우 등. 그러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함.
- 그러한 서비스 또한 발달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임. 또한 그러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과 훈련도 우리가 담당함.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모두 있음. 또한 그렇게 자립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의 임대료는 보통 본인들이 부담함. 본인의 근로소득 혹은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 소득으로 부담하게 됨.

○ 발달장애인이 도전행동 문제를 가진 경우 어떻게 서비스가 지원되는가?

- 현재는 그러한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하지만 그룹홈에 빈 자리가 날 경우 정부는 그러한 발달장애인을 그룹홈에 입주시키려 함. 하지만 다른 거주인들과 조화가 어려워 그룹홈을 운영하는 센터의 입

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음. 정부가 책정한 발달서비스 예산은 2014년 기준인데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들이 나이가 들 경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음.

○ 발달서비스의 예산지원 방식은?

- 20년 전에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사업계획을 내면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 현재는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춰야 함. 예를 들자면, 아동시설에서 성장한 성인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음.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노인이 된 자녀의 지원을 우선 원했음. 타협안으로 1+1을 제안했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마찰이 있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을 두고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됨.
- 최근에는 개인에게 예산이 할당되는 방식의 PASSPORT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발달서비스의 시장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용절감과 민간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 판단됨. 예를 들어 낮활동 프로그램에 1인당 5,000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임. 개인사업자들이 그들을 모아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질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임.
- 이러한 개인별 예산지원 제도가 현재의 낮활동 프로그램에서 주거서비스로도 확장될 예정임. 정부는 주거서비스에 대해 개인별 지원금 규모를 책정할 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 정부가 이러한 개인별 예산지원 제도를 계속 확장할 계획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 위기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구조인데, 예방적 대처가 부족함.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캐나다의 자랑인데, 발달서비스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순임.
- 자폐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주정부에서 개인 필요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학부모나 관계자의 반대로 그 장관이 사퇴한 일이 있었음. 발달서비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발언하지 않고 있음. 시장경제를 복지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현 시스템이 과도하게 비대하다는 잘못된 신화에 근거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인은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는가?

- 자폐성 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우리가 담당하는 장애인 중 40~50%는 자폐성 장애인임. 자폐성 장애인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 등이 필요함.

(4) Judith Sandys (Ryerson University)

□ 면담자

○ Judith Sandys (Associate Professor Emeritus, Ryerson University)

□ 주요 인터뷰 내용

- 온타리오주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대신에 ‘커뮤니티 리빙’(community liv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그것은 장애인이 단순히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또한 ‘케어’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리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온타리오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의 배경은?
 - 왜 시설을 폐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음. 우선은 1970년대는 미국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폐쇄 압력이 커지면서 그 영향이 확장되는 시기였음. 당시 미국 거주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부모가 시설이 좋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시설 자체가 좋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했음. 그 영향이 확장되어 온타리오에도 미쳤음.
 - 다음으로는 시설에서의 매우 가혹한 상황의 학대와 폭력이 폭로되었음. 1960년대 피에로 버튼(Pierre Berton)이라는 유명한 기자가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기사로 폭로했고, 이후 시설장애인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직접 돌보겠다는 운동이 생겼음. 북미 전체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작용했음.
 - 다른 이유는 시설 유지에 매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었음. 입소하는 사람은 많은데 퇴소하는 사람이 적어 대기자가 길고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당시 시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했는데, 대표적인 시설이 휴로니아임.
 - 1970년대 초에 울펜스버거가 캐나다에서 정상화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 영향도 컸음. 그는 북유럽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북미에 영향을 크게 미쳤음. 울펜스버거의 이론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쳤음. 장애인을 케어하는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임.

- 시설 폐쇄가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 지역사회 서비스가 크고 작은 매우 많은 지역사회 생활(Community Living) 조직에 의해 제공되고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는데,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었고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음.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와 시설 보호를 일정기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임.
 -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의 시초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시작했음. 장애인 가족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본인 가족에게 먼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문제도 발생했음.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재가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주거서비스에 먼저 들어가면서 탈시설화 속도가 둔화된 측면이 있음.

- 폐쇄된 장애인 시설들은 모두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었음.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장애인 시설이 현재 남아있는가?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도 존재함. 2009년에 시설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님. 그 시설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임. 그것들은 부칙1 시설이고, 부칙2 시설들이 있음. 이러한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지만 지역 자체적인 운영이 강한 시설들임. 물론 부칙2 시설들도 폐쇄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로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도 수십명이 거주하는 시설이 많지 않지만 존재하기는 함.
 - 시설화는 사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함.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2년에 한번 정부가 점검을 하는데, 형식적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홈을 작은 시설이라 평가하기도 함. 2008년 법률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 지원의 예산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

- 시설의 폐쇄에 대해 기존 거주시설의 종사자들, 혹은 거주시설에 살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의 저항은 없었나?
 - 온타리오에서도 처음에 탈시설화를 시작할 때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컸음. 그들은 상대적으로 고연봉이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직장을 바꾸면 연봉이 더 낮아지게 됨. 그래서 그들의 반대가 심했음.
 - 1960년대 보건부가 부모들에게 장애인 자녀의 시설 입소를 장려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었음. 1970년대 부모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음.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인식도 바뀌게 됨. 팬 허스트(중단연구) 사례만 보아도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탈시설 이전에는 80%가 시설보호를 선호했다가, 시설 폐쇄 후에는 80%가 지역사회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적으로 부모들의 저

항을 줄이는 방법은 지역사회 보호를 경험한 다른 장애인 부모를 소개하는 것이라 봄.

- 기존 거주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은 시설 폐쇄 이후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음. 상당수는 퇴직을 했고, 기존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에서도 채용하기를 꺼려한 것도 있었음.

- 2008년에 제정된 Ontario's 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가 기존의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을 대체했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정부의 예산 지원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하지만 DSO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가지 않음.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부모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시설화가 되는 결과일 수도 있음. 개인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그러한 통제권이 작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개인에게 제공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중계기관도 부족함.

- 2008~2009년에 마지막 남은 3개의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면서 약 1,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일시에 지역사회로 나왔음. 어떻게 그렇게 대규모의 탈시설이 일시에 가능했는가?
 - 1,000명이 2009년에 한꺼번에 나온 것은 아님. 그리고 온타리오 규모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었다고 봄.

- 2009년 당시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시에 나오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은 어떠한가?
 - 사실 당시 탈시설에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이후 장애인과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음. 대중이 크게 신경 쓴 것은 없었음. 당시에는 그보다는 원주민 자녀에 대한 정책에 대중의 관심이 컸음.

- 당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게 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그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는가?
 - 공식적인 모니터링이 있지는 않았음. 정부에서 행정적인 기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음. 개개인의 사례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결과가 썩 좋다고 말은 못하겠음.

-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들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 주거서비스임. 정부 지원이 있어 임대료가 싸서 비장애인의 입주를 유도하는 방식임. 두번째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룸메이트를 소개시키는 사업임.
- 마지막 3개의 시설을 폐쇄한 이후 시설 거주인과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주지사가 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소송과 사과 의미는 무엇인가?
- 주정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온타리오의 시설화 및 탈시설화 역사에 대한 내용이 거짓은 아니지만 모든 사실을 밝힌 것은 아님.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정도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하고 잔혹한 학대와 열악한 처우가 있었음.
- 온타리오에서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의 범위는 무엇인가?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와 동의어인가? 자폐(autism)를 포함하는가?
-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모두 발달장애에 포함됨. 지적장애와 자폐는 중복될 수 있음. 하지만 두 가지 판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자폐가 더 심한 장애로 평가되고 서비스 강도도 높기 때문에 보통 자폐 서비스를 받게 됨.
- DSO (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는 발달서비스의 access point라고 소개됨.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발달장애인이 DSO에 오면 우선 사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기록지가 있음. 서비스 설계를 해준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봄. 발달장애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DSO에서 좋은 지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 DSO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기관에 직접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DSO를 통해야 발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DSO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면 서비스 연계 기능으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발달서비스 대기자들이 많은데 현재 그들은 개인적으로, 가족들 간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

- 발달장애인이 18세가 되면 아동을 위한 지원이 중단되고 성인을 위한 발달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됨. 성인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발달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는가?
 - 온타리오에서도 장애아동들은 학교에서 돌봄을 많이 받음. 장애인은 21세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대부분 그때까지 학교를 다님. 21세 이후에 부모들이 상당히 힘들어함. 그들이 DSO의 대기자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CLO가 운영하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성인 발달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거의 형태는 어떠한가? 스스로 완전히 독립하여 살지 못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주거서비스는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기관들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매칭하는 형태, 위탁가정 형태, 그룹홈 등이 있음. 그룹홈도 단독, 단지 내 분산 등의 형태로 다양함.

-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도전행동(challenging behaviors)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거의 하루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 돌봄의 욕구가 많은 그룹을 나누면,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심해서 음식 조절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 지원이 그리 어렵지는 않음. 돌봄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정도 일 것임.
 - 하지만 도전행동이 심각한 경우에는 행동교정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효과가 미미하기는 함. 아직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음. 서비스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경우도 있음. 정신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24시간 시설로 가기도 함.

- 가족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생계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 주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가 없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음.

- 신체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거 시설 보호와 탈시설화 과정도 발달장애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가?
 - 신체적 장애인은 과거에도 거주시설에 잘 가지는 않았음. 신체적 장애가 심해 정

신적 장애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에 가기도 했음. 혹은 치료를 위해 시설 유사한 환경에 가기도 했음. 하지만 신체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은 애초에 없었음. 다만 맹인/농인 기숙사 학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설인 셈임.

-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앞으로 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음. 올펜스버거가 주장한 사회적 가치 부여가 필요함.
 - 단지 주거지만 필요한 것이 아님. 현재의 그룹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설적 사고방식(institutional thinking)을 바탕에 두고 운영됨. 룸메이트 선택, 지역사회 관계 등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제공하지 않음.
 - 장애인의 생활을 크게 바꾸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함. 과거에 온타리오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급여를 주도록 의무화하면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음.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이 이후에 낮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이 없음.
 - 처음의 탈시설 정책은 거주시설의 점진적인 전환이었음. 예를 들어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전환하는 형태였음. 하지만 기존 시설 거주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분산 배치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여전히 단절되는 문제가 존재함. 현재는 장소는 고정시키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붙임 1)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탈시설화 정책 현황 발표자료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Oh, Ukch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kchanoh@kihasa.re.kr

28th August, 2019

Features of Disability Policy in South Korea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 The single and comprehensive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since 1989
- Disability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disability benefits and services.

Disability types for registration are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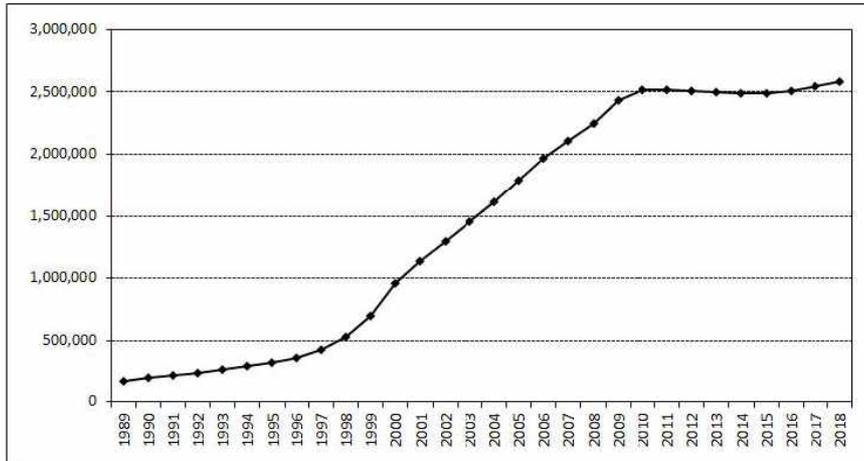
- The types of disabilities that can be registered is limited to 15.
- 5 types from 1989 → 10 types from 2000 → 15 types from 2003 to present

Severity of disability are defined by medical criteria

- The degree of disability is divided into 6 classes by medical criteria.
- As of July 2019, 6 classes have been simplified to 2.

1

The size of the registered disability population



2,585,876 persons in 2018 → 5.0% of the total popula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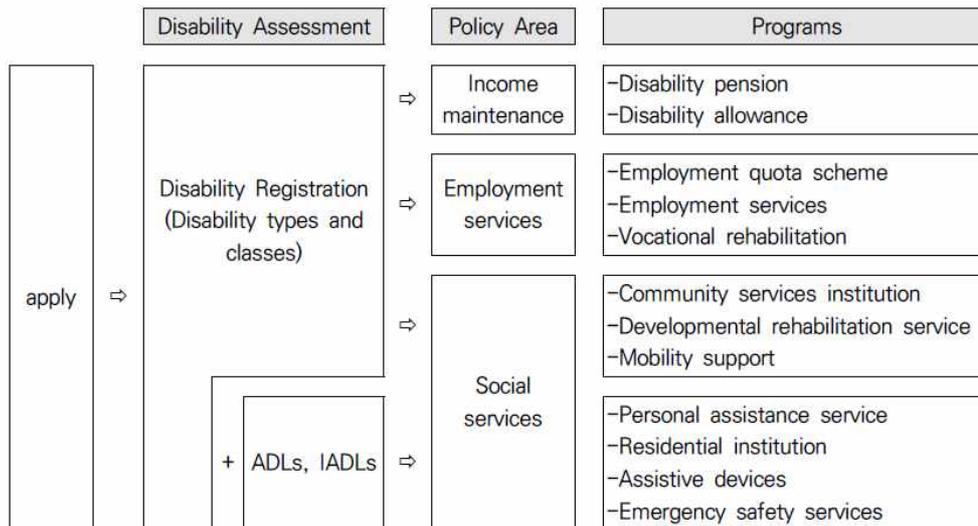
The size of the registered disability population (2018)

Disability Types	persons	%	Disability Types	persons	%
Physical Disability	1,238,532	47.9	Kidney Dysfunction	87,892	3.4
Visual Disability	252,957	9.8	Cardiac Dysfunction	5,304	0.2
Hearing Disability	342,582	13.2	Respiratory Dysfunction	11,761	0.5
Speech Disability	20,744	0.8	Hepatic Dysfunction	12,524	0.5
Intellectual Disability	206,917	8.0	Facial Disfigurement	2,689	0.1
Disability of Brain Lesion	253,083	9.8	Intestinal/Urinary Fistular	15,027	0.6
Autistic Disorder	26,703	1.0	Epilepsy	7,021	0.3
Mental Disorder	102,140	3.9	Total	2,585,876	100.0

Developmental disability is defined a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utistic disorder.

3

Disability Assessment and Service Provision



4

Institutional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apid expansion of institutional care

- (1960) 5,173 persons in 30 institutions
- (1980) 11,205 persons in 92 institutions
- (2017) 30,693 persons in 1,517 institutions

Restructuring institutions

-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1997.
- Independent living center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2007.
- Since 2011, the size of newly established institutions has been limited to less than 30 people.

5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Types	institutions	persons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39	1,690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17	700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7	232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313	12,008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33	10,996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9	429
Short-term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47	1,699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752	2,939
Total	1,517	30,693

6

Survey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Region	Year	Voluntary admission (%)	Hope to leave the institution (%)
Seoul	2009	-	66.4
Pusan	2009	4.7	57.5
Kwangju	2010	-	41.3
Seoul	2011	-	44.1
Kyeongnam	2011	10.6	60.8
Kyeongbuk	2011	3.7	35.9
Nationwide	2012	13.9	57.5
Incheon	2012	6.4	11.0
Daegu	2012	7.6	58.6
Kyeongbuk	2014	11.2	42.4
Seoul (Developmental disability)	2015	-	48.5
Cheonju (Cheonbuk)	2015	29.5	62.7
Kwangju	2016	15.1	79.2
Nationwide (Severe disability)	2017	14.3	48.6
Nationwide (Mental disability)	2017	13.4	61.0
Nationwide (Children)	2018	-	63.2
Chungbuk	2018	21.4	39.6

7

Recent policy for Deinstitutionalization

Local government

- Lump-sum grant for independence and settlement
- transitional and supportive housing
- additional benefit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Central government

- additional benefit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 'Deinstitutionalization' was first presented as a policy agenda in 2017.
- 'Master Plan for Deinstitutionalization' will be announced at the end of 2019.

(붙임 2) 캐나다 온타리오주 탈시설 역사 개요¹⁾

1. 서론: 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로

- 1876년 온타리오 주정부는 Orillia 외곽 Simcoe 호숫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시설을 설치함. 운영이 가장 활발했던 1968년에 이 곳에는 2,600명의 거주인이 있었음.
- 시설의 수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정부가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2년이 지난 1976년, 온타리오는 1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10,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시설보호를 제공하고 있었음.
- 발달서비스법은 온타리오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체계에서 진화의 전환점이었음. 이 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서 새로운 방식의 전환을 제시했는데, 자립(independence),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개인 선택(personal choice)에 초점을 두었음. 이러한 전환은 온타리오가 마지막으로 남은 시설을 폐쇄한 2009년 마무리 되었음.
- 1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친 이 이야기는 왜 시설이 설립되었고 왜 폐쇄되었는가에 대한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고,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이에 호응하여 어떻게 진화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임.
- 무엇보다 이것은 온타리오의 시설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임. 이 페이지를 그들에게 바칩.

2. 시설이 생긴 이유

- 온타리오 시설의 역사는 19세기 초에 시작됨. 시설화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서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음.
- 많은 종류의 시설이 있었음. 온타리오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시설(대부분 연방 수립 전에 설립)은 작업장(workhouse)이었음. 구빈원(poorhouse) 혹은 수용소(house of refuge)라고도 불린 이 시설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쉼터를 제공받는 곳이었음. 또한 고아, 미혼모, 노인을 위한 시설도 있었음.
-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정신병자 수용소(asylum for the insane)

1) 출처: <https://www.mcsc.gov.on.ca/en/dshistory/index.aspx>

로 불렸음.

- 19세기 후반기에는 새로운 종류의 시설이 설치되었음. 이것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음. 이 시설들은 백치(idiot), 정신병자(lunatic), 정박아(imbecile), 정신박약자(the feeble-minded), 간질환자(epileptic) 수용소로 알려졌음.
- 온타리오는 왜 1876년에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음.
- 우선 19세기까지는 감옥이 궁핍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종종 이용되었음. 이는 단순히 그들을 보낼 다른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가 헌법(Constitutional Act)을 제정한 1791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함.
- 다른 이유는 산업혁명의 영향이었음.
- 또 다른 이유는 우생학 운동과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보는 시각이었음.

○ 1791년 헌법(Constitutional Act of 1791)

- 1791년 영국 의회는 Upper Canada(온타리오)와 Lower Canada(퀘벡)를 신설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음.
- 당시에는 구빈법이 없었음. 주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빈자를 지원할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9세기에 온타리오에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정규 체계가 없었음.
- 이 시기에 사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과 발달장애인을 구별하지 않았음. 이들은 모두 정신병자(insane)로 간주되었음. 가족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최선이었음. 하지만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Upper Canada 출범 초기에 이들을 위한 유일한 시설은 일반적인 감옥 뿐이었음.
- 카운티 감옥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종합시설의 역할을 했음. 부랑죄(vagrancy)를 구실로 하여 노숙인, 극빈자, 노인, 정신병자는 범죄자와 함께 수용되었음.
- 감옥은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환경은 끔찍했음. 1930년 William Lyon Mackenzie은 한 감옥의 상황을 조사했는데, 그에 의하면 “여성 정신질환자 세 명이 지하층의 감방에 수용되어 있었다. ... 감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지푸라기가 깔려있었다. 두 명은 하나의 감방에, 다른 한 명은 따로 수용되어 있었다.” Mackenzie는 그들의 상황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 이상의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판단했음.

- 시민들의 지속적인 청원 이후 마침내 1839년 Upper Canada는 최초의 주립 수용소를 설립하였음. 또한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치 인가법’(An Act to Authorise the Erection of an Asylum within this Province for the Reception of Insane and/or Lunatic Persons)은 주정부에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였음.

○ 산업혁명

- 산업혁명은 대체로 18세기부터 19세기 초의 시기에 이루어졌음. 이는 기계화가 농업, 제조업, 생산, 수송에 주요한 변화를 발생시킨 시기였음.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거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음.
- 산업화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지방 마을에 살았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자족적이었음. 작은 가족 농장에서는 대부분의 필요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 다른 품목들은 교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음. 긴급상황에서는 이웃이 서로를 도왔음. 가족은 서로를 최대한 돌봐주었음.
- 산업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음. 사람들은 안정적인 공장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음. 노동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났음. 농업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했음.
- 사람들은 집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내게 됐음. 확장가족으로부터 고립되었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소득은 적었음. 도시는 과밀상태가 되었음. 주거가 부족했음. 곧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음. 빈곤, 노숙, 범죄, 열악한 노동환경, 질병.
- 사람들은 발달장애인과 추가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가족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다른 사람을 찾게 되었음. 시설은 해결책을 제공했음.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후에 시설화는 가족들에게 주요한 선택지가 되었음.

○ 우생학 운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

- 장애에 대한 지식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매우 달랐음. 신체적 장애 이외에는 의사들은 다양한 지적장애나 정신건강 문제를 구별하지 못했음. 정신질환과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종종 함께 다루어졌음. 의학적 관점에 의하면 장애는 적절한 훈련과 교정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의 결점이었고,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의료시설의 상황이 선호되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 시기에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휩쓴 우생학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음. 우생학은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집단을 통제하려고 하였음. 우생학 운동의 지지자들은 발달장애가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고 사회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시설로 보낼 것을 권고하였음. 그곳에서 그들은 보호된 상태에서 여생을 보냈음. 가족이 사랑하는 구성원을 가정에 두기를 원할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거의 없었음. 대체로 시설은 이용가능한 유일한 공적 서비스였음. 이러한 방식의 사고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음.
- 신선한 공기와 개방적 공간이 거주인에게 좋다는 믿음에 의해 시설은 계획적으로 도시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음. 이는 장애인을 더욱 더 고립시켰음. 장애인은 거주인이 아니라 환자로 취급되었음.

3. 최초의 시설

- 1839년 온타리오 정부는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치 인가법’(An Act to Authorise the Erection of an Asylum within this Province for the Reception of Insane and Lunatic Persons)을 제정했음. 이 법은 온타리오 정부에게 최초의 주립 발달장애인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
- 1876년 온타리오는 Orillia 외곽에 최초의 발달장애인 시설을 개설했는데, 시설의 이름은 ‘오릴리아 백치수용소’(Orillia Asylum for Idiots)였음. 이후에 ‘온타리오 병원학교’(Ontario Hospital School, Orillia)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09년에 폐쇄될 때 이 시설은 휴로니아 지역센터(Huron Regional Centre)로 전환되었음.
- 1890년 오릴리아 시설에는 309명의 거주인이 있었음. 1902년에 거주인의 수는 652명까지 증가했음. 가장 많았던 1968년에는 2,600명의 거주인이 있었음.
- 이후 더 많은 시설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수요의 증가 때문이었음. 1905년 정부는 Woodstock에 옥스퍼드 지역센터(Oxford Regional Centre)를 개설하였음. 1920년에는 Cobourg에 다시수용소(D'Arcy Place)가 개설되었음. 1970년대 중반 정부는 16개의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했음. 가장 많았던 1974년에 아동과 성인을 포함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10,000명이 넘었음.
- 1876년 최초의 시설이 개설된 이후 2009년 마지막 시설이 폐쇄되기까지 50,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시설에서 거주했음.

○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한 발달장애인 시설 목록

시설명	소재지	설립연도	폐쇄연도
Huron Regional Centre	Orillia	1876	2009
Oxford Regional Centre	Woodstock	1905	1997
D'Arcy Place	Cobourg	1920	1996
Durham Centre	Whitby	1950s	1987
Pine Ridge Centre	Aurora	1950	1984/85
Rideau Regional Centre	Smiths Falls	1951	2009
Southwestern Regional Centre	Chatham-Kent	1961	2008
Muskoka Centre	Gravenhurst	1963	1994
Midwestern Regional Centre	Palmerston	1965	1998
Adult Occupational Centre	Edgar	1966	1999
Prince Edward Heights	Picton	1970	1999
Northwestern Regional Centre	Thunder Bay	1974	1994
Bluewater Centre	Goderich	1976	1984/85
Nipissing Regional Centre	North Bay	1975	1977/78
St. Thomas Adult Rehabilitation and Training Centre (S.T.A.R.T. Centre)	St. Thomas	1975	1984/85
St. Lawrence Regional Centre	Brockville	1975	1984/85

4. 시설에서의 생활

- 온타리오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첫 번째 시설을 설립하였을 때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음. 발달장애인은 치료되고 돌봐줘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환자로 간주되었음. 따라서 시설은 거주인의 건강에 주로 초점을 두는 의료모델에 의한 돌봄을 제공했음.
- 당시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온타리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발달장애인 시설 거주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음. 시설화가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되는 1974년에 서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은 지역사회서비스부(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로 이관되었음.

○ 거주환경

- 초기에 시설 거주인은 큰 병동에서 생활하고 잠을 잤음. 1920년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병동은 50명이 잘 수 있는 침상을 일렬로 두고 있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음. 여성과 남성은 구분하였음. 등교나 외출을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거주인은 거의 만나지 않았음.
- 거주환경은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이 제정된 1974년이 되어서 변하기 시작했음. 이후 1987년에 정부는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배치하기 위한 2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음.
- 거주인이 사회의 새로운 가정으로 이주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설은 변화하였음. 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설 내의 대규모 방은 아파트나 작은 기숙사 형식의 거주지로 분리되었음. 예를 들어 12명이 하나의 거주지를 공유하고 4명이 침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음. 이러한 거주지는 화장실이나 식사장소와 같은 공용공간을 갖고 있었음. 때때로 단독 건물을 작은 집단의 거주인이 살 수 있는 “전환” 그룹홈으로 개조하기도 하였음.

○ 노동의 중요성

- 초기 시설에서 노동은 삶의 중요한 일부였음. 노동은 일부 거주인들이 분주하도록 하였고, 훈련을 제공하여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치있는 길이라 여겨졌음.
- 거주인들은 노동과 학습에 대한 간주된 능력에 따라 분류되었음. 그들은 능력에 따라 다양한 노동 활동에 참여하였음.
- 1920년대 여성 거주인들을 위한 전형적인 일자리는 부엌, 주방, 세탁실, 병동에서의 일이었음. 그들은 침대 정돈, 세탁물 분류, 식사 준비, 바느질, 깔개 수선 및 제작의 일을 했음.
- 많은 시설이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했음. 식재료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일은 시설이 자급하고 남성 거주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그들은 정원, 농장에서 일하거나, 가금류를 돌보거나 메이플 시럽을 만들었음. 요리를 하거나, 부엌일을 하거나, 목수일을 하거나, 매트리스를 제작하거나, 페인트칠을 하거나, 재단을 하거나 신발 수선을 하였음.
-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그들의 시설을 거주인이 분주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묘사했음. 보고서에서 시설 내 일자리를 가진 거주인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 수년 동안 거주인의 노동은 무급이었음. 시설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보상이었음. 휴로니아 지역센터의 1922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거주인의 노동이 가진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가정을 찾을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음.
- 이후에 거주인들은 노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소액의 돈을 받았음. 1970년대 들어 시설은 병동, 세탁실, 주방에서 일하는 거주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음. 또한 시설은 거주인이 계약에 의해 일하고 조립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만들었음. 이러한 일은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에 기여되는 것은 아니었음. 시설에서 양호한 노동 기술을 증명한 일부 거주인은 “공증”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의미이며, 가사도우미, 농장 일꾼, 식당 종업원 등으로 고용되었음.

○ 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

- 시설은 거주하는 아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였음. 아동의 정신연령에 기초를 둔 교실 지도, 감각훈련 교실, 야외학교, 직업훈련
- 처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자신들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일부 관리자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일부 관리자들은 직업훈련이나 암기, 반복과 같은 더 전통적인 형태의 학습에 초점을 두었음. 결과적으로 교육과 훈련은 시설마다 상당히 다양했음.
-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진화했음. 하지만 1960년대 들어 교육자들은 시설의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할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음. 1966년 온타리오 정부는 시설에서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음. 이는 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체계에서 가르치는 것과 더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 1972년 정부는 시설에게 모든 거주 아동에게 전일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음.

○ 건강관리

- 초창기에도 신체활동은 시설 거주인의 돌봄에서 중요한 측면이었음. 1900년대 중반까지 돌봄에 대한 의료모델을 견지하면서 거주인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간주되었음. 신체활동은 오락이 아니라 재활의 기회로서 중요했음.
- 1877년부터 1910년까지 Orillia 시설에서 관리자를 한 Alexander Beaton 박사는 신체활동에 대한 옹호자였음. 그는 일련의 신체운동을 개발하고 거주인들에게 가르쳤음. 여기에는 사다리 오르기도 포함되었음. 노동 역시 요법의 형태로 장려되었음. 육체노동

은 발달장애인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발산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음.

- 신체활동은 옥스퍼드 지역센터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하였음. 1905년에 설립된 이 시설은 1916년에 오락실(recreation hall)을 설치하였음. 1923년 9월 4일, 시설은 거주인들을 위한 “운동의 날”을 개최하였음. 이 행사는 시설에서 조직화된 스포츠와 운동으로의 전환의 시작으로 간주됨.
- 시간이 흘러 의료전문가들은 신체활동이 개인의 감각 및 운동 기술,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됨.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을 입은 퇴역군인을 위해 개발된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었음.
-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생활 운동이 있었음. 연구결과들은 신체활동이 거주인의 건강과 안녕에 주는 편익을 보여주었고, 오락 프로그램은 시설의 운영에서 핵심요소가 되었음.
- 1970대에는 스페셜 올림픽의 국제적 확산이 온타리오 시설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음. 이후 온타리오 시설의 일부 거주인들은 수영, 볼링, 육상과 같은 대회에 출전하였음.

5. 시설에서 제공된 전문 서비스

-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태도가 변했음. 부상을 입은 퇴역군인을 재활시키기 위한 의료와 기술의 진보는 결국 신체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음. 1960년대 후반에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었음.
- 이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대는 여전히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간주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치료법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했음.
- 온타리오는 1955년에 재활서비스법(Rehabilitative Services Act)을 제정했음. 캐나다에서 최초인 이 법은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규정했음.
- 1974년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이 제정되기까지 이후 20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었음. 이러한 전환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음.

6. 가족의 역할

- 1958년 2월 17일 아홉의 여성이 모였음.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음. 하나는 그들이 Smiths Falls 학교병원 거주인의 어머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타와 정신 지체아 협회(Ottawa and District Association for Mentally Retarded Children)의 회원이라는 점임. 이 여성들은 'Smiths Falls 학교병원 복지리그(Welfare League)'라는 단체를 조직했음. 이들의 목표는 거주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의 직원들과 협력하는 것이었음. 1962년 단체의 이름은 'Rideau 지역센터 협회'(Rideau Regional Centre Association)로 변경되었음.
- 1960년대에 많은 시설이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었음.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가족협회로 알려졌음. 시설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거주인의 삶과 전 조직의 안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
- 오늘날에도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유사한 프로젝트와 활동에서 함께 일하고 있음.

7. 시설에서의 일(working)

- 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직원이 필요했음. 예를 들어 1971년 Smiths Falls에 있는 Rideau 지역센터는 2,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음. 그 중 709명이 전일제 직원이었음. 나머지는 시간제 혹은 호출형(on-call) 피고용인이었음.
- 일부 직원은 거주인을 돌보는 역할을 했고, 다른 직원들은 시설을 유지하는 일을 했음.

8. 표현의 변화

-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사용한 단어는 계속 변해왔음.
-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발달장애인은 종종 “정신박약자”(feeble-minded)로 불렸음. 이들은 능력 정도에 따라 “고등급”(high grade) 혹은 “저등급”(low grade)으로 분류되었음. 1900년대 중반에는 “정신지체”(mentally retarded)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교육 가능자”(educable), “훈련 가능자”(trainable), “수용 요구자”(custodial)로 분류되었음.
-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러한 용어는 가혹하고 경멸적이기까지 함.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인정되는 의학적 용어였음.
-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고, 용어 역시 변했음. 사회는 낙인감을 보다 덜 주고 더 세심한 용어를 찾기를 원했음. 1990년대 후반 들어 “발달장

애인”(developmentally disabled)이라는 용어가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

- 이러한 용어는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님.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 것임. 모든 시기에 사람들은 이전 시기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함. 여전히 우리는 특정 시간들과 관련된 용어의 경향성을 규정할 수 있음.

9. 지역사회 생활(community living)로의 전환

- 온타리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돌봄은 1974년에 정점을 찍었음. 당시 정부는 16개의 시설을 운영했고, 그곳에 8,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았음.
- 1960년대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음. “지역사회 생활 운동”(community living movement)이 북아메리카에 확산되었음. 이 운동은 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자신의 자녀가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가족들에 의해 시작되었음. 동시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역시 완전한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음.
- 지역사회 생활 운동의 지지자들은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들은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원이 있다면 발달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온타리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에 호응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집단 및 개인 거주환경은 물론 보호작업장이나 생활기술 프로그램과 같은 낮 프로그램을 포함함. 시설에서 지역사회 지원으로의 전환은 이후 40년간 상당한 진화를 지속했음.

○ 1970년대

- 사람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충분히 만들어 결국에는 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
- 1974년 온타리오 정부는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단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을 제정하였음.
- 새로운 접근은 돌봄에 대한 의료모델과 달리 지역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을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부(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로 이관하였음.

- 정부는 거주인을 더 작은 거주지나 아파트로 이전시키는 것과 같이 시설 내에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시작했음.

○ 1980년대

- 1975년에서 1986년 사이에 온타리오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지원이 급속히 확대되었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는 4,600명에서 25,000명 이상으로 늘었음.
- 이 시기에 온타리오 정부는 1)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8,100만 달러로 늘렸고, 2) 다섯 개의 주립 시설을 폐쇄했으며, 3) 나머지 몇몇 시설의 규모를 줄였음.
- 1982년 정부는 신체장애 혹은 발달장애 아동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가정서비스(Special Services at Hom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1990년에 이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음.
- 1987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도전과 기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mmunity Liv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Handicaps)이라는 제목의 계획서를 발표했음. 이 계획서에서 정부는 25년 이내에 (2012년까지) 온타리오에 남아있는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음.

○ 1990년대 이후

- 1987년에서 2004년 사이에 온타리오는 다른 6개의 시설을 폐쇄하였고, 6,000명 이상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로 전이하는 것을 지원했음.
- 2004년 9월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음.
- 2004년 9월 9일 온타리오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 강화를 위한 1억 1천만 달러의 계획을 발표했음. 또한 발달서비스 체계에 대한 주요 점검에 착수했음. 이 계획의 중요한 일부로, 정부는 2009년 3월 31일까지 남아있는 세 개의 발달장애인 시설 (Huronian 지역센터, Rideau 지역센터, Southwestern 지역센터)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 2008년 10월 8일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촉진 서비스법’(Ontario's 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에 대한 왕실 승인이 이루어졌음. 이 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발달서

비스법을 대체했음.

- 1974년 법률이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온타리오의 발달서비스 체계는 이후 변화했음. 오늘날의 체계는 1)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보다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2) 개인과 가족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보다 많은 선택과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새로운 법률은 향후 발달서비스 체계의 개선과 지속을 위한 틀을 제공할 것임.

10. 정부 정책과 법률의 진화

- 정부 정책과 법률은 지역사회 내 옹호 운동의 확산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지식의 변화에 호응하여 진화했음. 정부 정책의 주요 흐름은 시설에서 지역사회 생활로의 전환임.

○ 1839~1960년

- (1839년) 온타리오 정부는 ‘정신질환자 수용소 설치 인가법’(An Act to Authorise the Erection of an Asylum within this Province for the Reception of Insane and/or Lunatic Persons)을 제정했음. 이 법은 정부에게 최초의 주립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온타리오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부여했음.
- (1876년) 온타리오 정부는 Orillia에 최초의 발달장애인 시설을 개설했음.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화는 감옥 및 다른 수용소의 포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태도와 같은 많은 이유가 있었음. 대규모의 시설이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신선한 공기와 개방적 공간이 거주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1876~1960년) 이 시기에 온타리오 정부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더 설치하였음. 1960년에 온타리오 정부는 직영 시설을 늘렸고, 6,000명 이상이 거주했음.

○ 1970년대

- (1971년) Walter Williston은 보건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조사 수행을 요청받고, ‘온타리오 정신지체인의 돌봄과 감독의 현황’(Present Arrangements for the Care and Supervision of Mentally Retarded People in Ontario, A Report for the Minister of Health)이라는 보고서를 준비했음.

- Williston은 온타리오 학교병원 체계(온타리오의 발달장애인 시설)가 1) 보건, 교육, 사회 및 가족 서비스의 주류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2) 지역사회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음. 그는 1) 시설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 주거 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교육, 오락, 상업 시설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이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에게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정상화의 개념을 주창했음.
- (1972년) ‘휴먼서비스에서 정상화의 원칙’(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1972) 책을 쓴 Wolf Wolfensberger 박사는 북아메리카에 정상화의 개념을 도입했음. Wolfensberger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었음.
- 그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1) 일반 사람들의 전형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고, 2)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보장하고, 3) 일반 사람들과 함께 통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4)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음.
- Wolfensberger는 이러한 전략이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가치있는 역할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제안했음.
- (1973년) 주정부의 사회발달 책임관인 Robert Welch는 ‘온타리오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 생활’(Community Living for the Mentally Retarded in Ontario: A New Policy Focu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생활 개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초점을 제시했음.
- Welch 보고서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증가시킬 네 가지 권고를 하였음. 1) 후견 및 보호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발전되어야 함. 2) 주거돌봄 자원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할당되어야 함. 3) 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주류 사회 내에서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함. 4) 주정부 및 지방정부 양 차원에서 조정 기제가 구축되어 광범위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야 함.
- (1974년) 정부는 ‘발달서비스법’(Developmental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확립했음. 또한 이 법은 발달서비스의 책임을 보건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부로 이관했음. 당시에 온타리오 시설에는 약 8,000명의 거주인이 있었음.
- (1975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거주인의 발달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하

여 시설돌봄의 표준을 개발하였음.

- (1976년) 온타리오는 16개 시설을 직영하였음.
- (1977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주립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음. 지역사회서비스부는 거주인을 시설 밖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음. 이 원칙들은 1) 개인 선호의 존중, 2) 가족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 3) 친구 및 다른 핵심 관계의 고려, 4) 개인의 발달 프로필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사회서비스부는 1) 1977-78년에 North Bay의 Nipissing 지역센터를 폐쇄하였고, 2) 다른 시설의 거주인 수를 감축하였음.

○ 1980년대

- (1982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주립 시설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기회 제공을 위한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음. 이 계획에서 지역사회서비스부는 1) 시설의 거주인 수를 지속적으로 줄였고, 2) 네 개의 시설을 폐쇄하였음.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신체장애 혹은 발달장애 아동이 가족과 가정에서 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가정서비스(Special Services at Home)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1990년에 이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이 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1987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도전과 기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mmunity Liv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Handicaps)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 계획은 1)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수립, 2) 시설 돌봄의 단계적 폐지라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향후 7년간 정부의 전략계획을 제시했음. 이 계획에 의해 지역사회서비스부는 5개의 시설을 추가로 폐쇄하였음. 또한 정부는 남아있는 모든 직영 시설을 25년 이내(2012년까지)에 폐쇄하기로 하였음.
- 이 계획의 이행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아동에 대해, 이후에는 성인에 대해 ‘신규입소 중단 기조’(zero admissions philosophy)가 실행되었음. 이 계획은 1) 자립, 2) 보호, 3) 개별화, 4) 서비스 질이라는 네 가지 서비스 원칙을 확립했음.
- 198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온타리오는 다른 6개의 시설을 폐쇄했고, 6,000명 이상의 사람이 지역사회 삶으로 전이되었음. 1974년부터 시작된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Worker) 프로그램은 가족의 큰 도움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옹호, 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1990년대

- (1996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978명의 시설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지역사회 생활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세 개의 시설이 폐쇄되었음.
- (1997년) 온타리오 정부는 유자격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위해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법’(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Act)을 제정했음.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서비스”(Making Services Work for People)라는 정책 기조가 대부분의 주거 서비스가 모든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고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할당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음. 초점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었음.

○ 2000년대 이후

- (2000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청년 발달장애인이 교육에서 지역사회 노동 및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토대”(Foundations)를 도입했음.
- (2001년) 2001년 지역사회서비스부는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삶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개년 계획을 수립했음. 이 계획은 1) 고령화된 부모를 둔 초기 성인, 2) 이행 연령대의 청년, 3) 다변적, 다중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세 개의 우선순위 집단에 초점을 두었음.
- 2개년 계획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 1) 서비스 제공기관 재활성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성과 역량 강화(인력 및 임금 문제). 2) 거주 장소: 다양하고 충분한 지역사회 기반 거주지 마련. 3) 지역사회 지원: 일시휴식, 낮 프로그램, 특별 지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에 대한 투자. 2개년 계획은 남아있는 시설의 폐쇄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었음.
- (2004년) 2004년 9월 지역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발달서비스 체계를 1)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하고, 2) 2009년 3월 31일까지 남아있는 3개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마지막 3개 시설의 폐쇄는 1) 900명 이상의 사람이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되도록 하고, 2) 1987년에 수립한 원칙을 준수하며, 3)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이 완전히 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음.
- 이 시설들의 폐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기반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포용, 자립, 선택을 촉진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었음.

- (2008년) 온타리오 정부는 2008년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촉진 서비스법’(Ontario's 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였음. 이 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발달서비스법을 대체했음. 이 법은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보다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보다 많은 선택과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이 법은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1) 더 좋은 서비스, 보다 쉽고 가정에서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2) 더 많은 서비스, 개인과 가족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 공정성, 온타리오의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 (2009년) 2009년 3월 온타리오의 마지막 발달장애인 시설이 폐쇄되었음.
- 오늘날 지역사회서비스부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은 다음과 같음. 1) 가정내, 가정외 일시휴식. 2)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유지를 위한 특별 지역사회 지원. 3)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노동, 자원활동, 여가, 오락 기회를 제공하는 Passport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사회 참여 지원. 개인 발달을 위한 지원도 제공되어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4) 개인의 자립적 생활, 24시간 집단 거주, 가정홈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 및 거주서비스.
- 온타리오는 2008/09 회계연도에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지원을 위해 15억 7천만 달러를 지출했음. 여기에는 15,000명 이상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일시휴식, Passport, 특별가정서비스 등이 포함됨. 47,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DSP)에 의한 소득지원을 받았음.

11. 지역사회 내의 가정

- 2009년 3월 온타리오 정부는 1987년에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기반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였음.
- 7,000명에 가까운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새로운 가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음. 가정은 개인, 가족, 종사자, 의료전문가, 지역사회 기관을 포함한 계획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보다 잘 충족함.
-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온타리오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이웃과 사회의 일상생활에 진정하게 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 개인,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제공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